

#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현황과 전망\*

오 윤 자(경희대학교 교수)

## I. 들어가며

서구유럽에서 가족정책이 대두되기 시작했을 때 인구계획정책과 요보호 가족대상의 복지서비스정책과 관련하여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까지는 묵시적이며 간접적 방식으로 가족정책이 진행되어 왔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명시적이며 적극적인 특성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초의수, 2009). 최근에는 가족문제가 다양화되는 경향에 따라 정책대상을 보는 관점이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변화되었다(김승권외, 2009). 즉, 특정한 이념성을 지향하는 가족의 지원에서 탈피하여 법적, 생물학적, 사회적 관계에 토대를 두고 생활현실로 존재하는 모든 가족들이 정책적 개입의 단위로 고려되어야 함이 강조되었다(이진숙, 2004). 이와함께 다원화된 사회의 효과적인 통합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 가족의 증가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기도 하다.

다문화 현상이나 다문화사회의 형성은 국제적 관심사로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에 걸쳐 빠른 속도의 사회적 역동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주의 다양한 형태 중에서 특히 결혼을 통한 이주가 상시적이고 일반적인 현상이 되고 있음과 동시에 다양성의 가치 수용이나 사회통합의 구체적인 대안이 요구되는 정책적 과제를 부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오윤자, 2009a). 다시 말해서, 새로운 사회적 경험 내지 예측가능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제도화해야하는 이중적 현상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된 서구의 선경험은 이러한 과정이 단선적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사회구조적 모순이 노정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직·간접적 갈등이 야기되면서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될 가능성(김이선·황정미·이진영, 2007)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

단기간 우리사회에서는 다문화 관련 담론이 적극적으로 진행되면서 현상을 중심으로한 정책 수립의 노력과 공식적·비공식적 지원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형성이 급격히 진행된 측면이 강하므로 다문화가족지원은 초기적 단계의 온정적이고 자선적 경향을 가질 뿐 아니라 정부차원의 지원 역시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으로의 고착에 초점을 두고 정책과 지원체계를 구성해 나가고 있다(오윤자, 2009a). 한편, 다문화의 경우 자칫 문화에만 관심을 두므로써 개인을 포함한 통합적인 가족단위 측면에서의 일상성이나

\* 본 원고는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발제원고(2009), 한국다문화학회(2011) 구두발표자료에 기초하여 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문화의 경로는 주로 결혼, 노동, 탈북 등으로 본 원고에서는 국제결혼과정을 통하여 결혼이주로 형성된 가족으로서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이며 다른 1인은 한국인이며 국내 거주인 협의의 다문화를 의미하며 다문화정책과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동일한 의미로 함께 사용하였다.

생존의 문제를 간과한다는 비판의 여지도 가능하므로 다문화가족 지원이 적절한 개념으로 사료된다. 또한 시기적으로 볼 때, 일천한 경험으로 전개되어 온 다문화가족지원의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 되므로 정책으로 정립된 다문화가족지원을 통하여 개인과 가족생활의 안정은 물론 능동적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문화가족지원이 단순히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개인·가족·사회·국가 및 세계화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으로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조정과 통합의 부재로 파편화되고 분절적인 욕구를 확대 재생산시킬 수도 있으므로 수평적인 분산 조정과 통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문화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초기에는 외국인노동자 중심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고 근래들어 다문화가족,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자녀들로 관심이 옮겨졌으며 사회학, 인류학, 생활과학, 교육학, 여성학, 사회복지학 등 학문적 영역 역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하여 다문화 관련 연구의 다른 구성축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 개발 및 실천으로 다문화가족에게 체감시키는 효율적 지원의 체계적인 틀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다문화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사회의 일반적인 다문화에 대한 태도 및 정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여 만족의 체감화를 확인할 수 있는 가이며 이러한 과정은 나아가서 결과를 반영한 정책수립의 순환적인 과정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오윤자, 2009a).

기실 다문화사회의 전개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이민자집단의 사회적 분리와 사회·경제적 주변화이며 제기되는 문제를 예방하고 사회문화적 다양성이 긍정적 방향으로 구현(김이선외, 2011)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정책의 핵심으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지형 전환이 필요하므로 본 연구는, 정부의 다문화가족 관련 단기·중기적 정책이 수립되어 초기단계의 전개가 되고 있으므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현황 탐색에 초점을 두고 향후 전망에 대한 제언을 포함하고자 한다. 즉, 현재 시점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통하여 미래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현황에 기반하여 조망하므로써 중장기 정책 수립 및 실천을 위하여 변화 이해, 문제점 분석,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주요 연구내용은 다문화가족지원에 대한 추진배경 및 진행과정, 국내외 정책 현황, 그리고 안정적인 기반 마련을 위한 전망이 된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는 객관적인 사회현상을 지칭하는 기술적 개념으로 민족적·문화적 다양성을 의미하는 동시에 이를 기본적 원리로 수용(김이선 외, 2011)할 뿐 아니라 이를 기초로 한 정체성을 유지하여 증진시키는 것이 사회발전의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념적 지향 역시 포함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은 결혼이주를 통한 국제결혼으로 형성된 부부 중 한 사람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가족 내지 가정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주요방법으로는 문헌연구, 그리고 관련 업무발굴을 위한 각종 자문회의 자료 및 현장실무진 중심의 정례회의 자료에 기초한 내용분석이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문헌연구를 통한 학문적 접근, 적용과 활용 관점의 전문가집단 자문회의 내용, 지역적 특성과 다양성에 기초한 체감된 생활통합 측면의 요구내용 등이 자료로 사용되었다.

## II.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현황

### 1. 다문화가족·정책 추진배경 및 형성과정

현재의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이 가능했던 배경에 있어서, 준비없이 발생한 사회적 현상의 관심과 적극적인 개입이 전개되어 오면서 단기간일지라도 명시적 정책을 규정할 수 있는 근거와 기반의 미약 때문이라고 할 수 있기도 하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시기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의 근본적인 성찰이 요구되는 시점을 지나오고 있다. 즉, 다문화현상 선경험 국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다문화 발생 배경에서부터 우리사회와 차이가 있으므로 이들 국가의 관련내용 분석을 통한 시사점 및 과정 탐색결과의 활용에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함께 다문화 관련 기존 정책과 현재 발생되고 현상의 괴리적인 부분의 해소 역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다문화가족지원의 추진동력에 있어서, 추진체계 논의 이전에 상호작용성·적극성·자발성 등의 안정적 동기기반 마련이라는 관심의 또다른 시작인 측면이 될 수 있다. 이는 다문화가족 지원에서 일방향적·시혜적·온정적인 접근이 일반적이므로 방향 전환을 통하여 실제 능동적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의미하고 있다.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존중 및 관용적 수용, 의사소통 능력, 문화적 민감성, 다문화적 역량강화 등이 교육되며 사각지대 해소를 포함한 보편적 복지체제로의 전환을 들 수 있다. 세번째로는, 지속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현상은 미래 우리나라 발전의 성장동력으로의 운용이 되어야 하는 고민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현상에 대한 폭주된 관심과 빨리빨리의 생활습관 덕분에 이루어져 온 산발적이고 체계화되지 않은 다양한 정책의 조정과 유기적 연계를 시도하므로서 다문화가족 지원의 핵심을 강조하게 된다. 또한 급증한 다문화가족지원으로 사회와 국가적 재정부담 역시 증가할 것이므로 경제적인 정책적 고려가 동시에 병행되어야 할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표 1> 우리나라 중앙행정부서의 다문화가족지원 정책

부 처	정책의 내용	
보건복지가족부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 -한국인 배우자 교육 -종합정보제공 및 통·번역서비스 -아동양육지원 -취업연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한국생활정보제공 및 상담 -한국어 교육 및 임신출산지원 -위기개입, 가족통합 교육 -취업역량 강화 -다문화사회 통합 선도자 육성
교육과학기술부	-EBS 한국어 교육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자체 지원 우수사례 발굴 -유아를 위한 다문화 이해 자료개발 보급 -한국어, 한국문화교육과정 개설 -다문화, 다인종 교육요소가 반영된 교육과정 개발 -불법체류 자녀 교육권 보장 -교육부·시도교육청·각급학교·지자체·민간단체 등 협력체제 구축	-지역인적자원 개발사업 -다문화 가정 자녀 상담교사 지정 -교원연수 -현행 교과서 민족주의 요소 발굴 삭제검토 -대학생 멘토링
법무부	-외국인 출·입국 심사 및 입국 허가 -외국인 사업연수 지원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사회통합프로그램 실시 및 이수제 시행계획	-외국인 및 재외동포 체류 지원 -외국인 사회통합정책과 국적취득요건 연계 시행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및 hikorea.go.kr 운영 -이민자네트워킹구축사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실시 -한국어 교재개발 및 요리, 육아관련 생활정보제공,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가이드북 제작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문화체육활동 시설지원 -이주 노동자 대상 문화프로그램 지원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농촌지역 가정방문 한국어 교육실시 -문화센터 운영 -아시아 열린문화축제 사업
노동부	-외국인 상담 및 취업 알선 사업 -외국인력 도입 및 송출국가 선정 -고용허가제 운영, 불법고용 대책 지원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 및 권익 보호 -외국인차별금지 및 제한적 취업허용 정책 -고용안전센터 운영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농림수산식품부	-양육지도사 및 한국어교사 파견 -교육도우미를 통한 방문과 소그룹 형식의 교육 및 상담실시 -가족 통합 지원사업 -산하기관을 통한 영농교육, 생활예절 및 문화 교육, 요리강습, 결연사업 추진	-출산농가도우미,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여성부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가정폭력 전용시설 운영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 -여성이민자를 위한 1366긴급지원 콜센터 운영	

출처 : 유용식·손호중(2009)

다른 한편으로, 이미 잘 알려진 다문화가족 및 정책추진 형성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첫단계는 1990년대 후반으로 결혼이민을 통한 다문화가족 형성의 증대 시기라고 명명할 수 있겠다. 이 시기에는 주로 산업연수 형식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과 함께 결혼이민이 증가하였으며 특정 종교를 통한 국제결혼, 소위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및 1994년 한중수교 계기로 재중 동포 여성들의 국제결혼이 증가하였다. 그러면서 이 시기는 다문화가족을 포함하여 관련 정책의제 형성기(김이선 외, 2011)로서 다양한 형태의 이주민 중 일부에 해당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보호, 적응, 국적 등의 제한적인 관심과 의미가 부여된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다음단계는 2000년

대 초중반으로 다문화가족 급증 시기가 된다. 특히 결혼중개업체 통한 동남아시아 지역 출신 여성결혼이민자 유입 및 이로 인하여 다문화가족이 사회적 유행과 같이 급증되던 중 가족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다문화가족 문제의 심각성이 국내외적으로 발생되면서 다소 감소를 보였다. 정책적으로는 정책태동기(김이선외, 2011)로 인권침해, 가족갈등, 자녀성장환경 등의 관심이 부상하면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중앙행정부서를 중심으로 정책적 대응이 시도되기는 해도 미약하였다. 현단계는 2000대 후반으로 다문화가족의 형성이 인구구성의 큰 변화를 초래하므로 이를 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및 시행 시기가 된다. 다문화가족은 국내 전체 인구의 약 2.2%, 여성결혼이민자는 0.3%(2009년 기준), 전체 혼인건수 중 국제결혼의 비율은 10.5%(2010년 기준)로 증가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증가에 따른 학령기자녀 지원에 관심이 집중되고 2050년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자녀)의 인구 예측은 전체인구의 5%를 상회(216만4천여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성장기(김이선외, 2011)로서 다문화가족 개념이 공식 정책에서 채택되고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법근거의 전달체계 확대, 지원예산의 증액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관련 정책이 확대된 시기이다. <표 1>를 통해서 기존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주요내용을 중앙행정부서별로 살펴볼 수 있으며, 최근 관계부처합동으로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다.

## 2. 외국의 다문화정책 현황

많은 연구들에서 외국의 다문화정책을 논의해 오고 있으므로 본 원고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이해를 위한 맥락에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서구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다른 다문화형성의 배경을 가진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인바, 이에 기초하여 우리사회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수립 전개를 위한 선별적인 벤치마킹 요소의 탐색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즉, 각 나라의 다문화정책 및 실천 내용은 오랜 역사적 과정의 산물로서 국가와 지역적 특수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거듭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다문화가족 발생 배경이 우리의 다문화현상과 큰 차이가 있으므로 당연히 정책지원 기초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서구의 경우 다문화가족 형성의 역사가 장구하므로 이미 세대별로 특화된 핵심의제를 중심으로 단계적인 공론화 현상이 출현중이다. 예를들면, 이주 1세대 중심으로는 정치적 시민권에, 2세대 중심으로는 사회경제적 시민권에, 3세대는 문화적 시민권이 된다. 따라서 서구의 다문화가족 형성과 비교해 볼 때, 우리사회의 경우에는 돌봄공백과 가계계승 위한 결혼이주가 대부분이며 농촌지역 중심으로 태동한 반면 경기·서울 지역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 배우자(남편) 생활능력 부족, 미숙련 저학력 여성결혼이민자가 대다수로서 또한 대부분의 다문화가족이 사회취약계층임을 알 수 있다.

<표 2> 외국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개요

국 가	정책 및 프로그램의 내용	비 고
호주	-언어 등 기초 능력 배양 -생산적 다양성 프로그램 시행 -Living in Harmony 프로그램 시행 -문화적 다양성을 중요자원으로 인식하는 환경변화도모 -Harmony Day 지정 -AIMA(호주다문화연구소) 설치	2000년대 중반이후 다문화 주위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팽배하면서 통합주의로 회귀의 경향을 보임
일본	-커뮤니케이션 지원 : 지역정보제공의 다국어화, 일본어 학습지원 -생활지원 : 거주·교육·노동·의료·보건·복지·방재에 대한 정보제공. 생활 및 노동환경 개선. 법률·의료 통역 상담업무 등 전문 인재 육성. 유학생 지원 등 -다문화공생의 지역 조성 : 다문화 사회에 대한 계몽. 공 생의 거점 마련. 교류이벤트 개최. 외국인 지역사회 활동 참여보장 및 촉진. 지역사회 공헌. 외국인에 대한 표창. 자주조직 지원. 심의회 및 위원회에 외국인 참여 등	총무성이 다문화 공생정책을 총괄하지만 소극적인 활동을 할 뿐이며 실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벌임
프랑스	-이민자 국적 정책 : 국가정체성부 신설. 선별적 이민정책. 단속 쿼터제 실시. 자발적 본국 송환 희망자에 대한 지원. 가족여부 확인을 위한 DNA 검사 등. -인종차별 퇴치정책 : 차별퇴치 평등 고용청 설치. 통합과 차별퇴치 지원 기금 조성. 인종차별 퇴치 전문가 양성 및 현황 조사 -교육정책 : 학교에서 종교적 표상착용을 금지하는 종교적 상징물 착용 금지법 신설. 내국인과 동등한 교육기회제공. 기존 교사에 대한 재교육. 프랑스어 교육센터 신설. 직업재교육의 내용에 프랑스어 신설. 초등교육에 이민자 본국의 언어습득 기회제공. 교육관련 자료를 모국어로 제작. 네트워크 위원회 설치. 도우미 제도 활용 -주거정책 : 도시외곽지역에 영세민 임대아파트 건립. 상가건물 및 공공 복리시설 건립 -문화정책 : 방송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 국립이민역사관 건립 등	이주민의 인종 및 다양성을 인정하기 보다 그들을 프랑스사회에 동화/통합시킴으로서 단일한 공동체를 구성하는 정책이지만 최근 들어 통합모델에 대한 회의가 생기면서 영미식의 다문화주의 모델에 관심을 두고 있음
독일	-사회통합교육 이수 의무화 : 사회통합코스(언어, 법률, 문화역사 교육)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주민 통합정책 수행 : 이민청소년통합 서비스 -이주민 특별 프로젝트 'Staregio' 시행 : 직업훈련 지원 -외국인 대표기구 및 주와 연방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자문권 인정 -독일과 외국인이 상호 자국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의 시행과 더불어 스포츠, 음악, 서커스 연습 등 서로의 이해 폭을 넓혀주는 각종 문화행사 개최	이민자 개인이 아닌 가족의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정책수립에 주력하고 있음
미국	-적극적 차별수정정책 -다양한 교육지원 정책(성인교육 및 초중등교육의 법제화) -불법이주민에 대한 사회복지권리 보장(자녀양육, 임신, 출산 등)	개별문화의 다양성과 독창성을 존중하면서 상호 공존할 수 있는 다문화공존의 제도마련
캐나다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세계 각국의 문화 연구 지원 -소수민족을 위한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교육 -소수민족 문화에 대한 공적 지원 -국민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종족집단간의 상호교육 촉진 -전체사회 참여를 위한 공용어 습득 장려 -원주민들을 위한 학교 설립 -소수민족의 언어 사용 장려	“창조적이고 응집력 있는 캐나다” 구현을 목표로 동화정책 집행. 즉 국가분열을 방지하기 위한 다문화주의 정책을 시행함
스웨덴	-이민자 차별금지 장치 마련 -정부 비시민의 투표권 부여 -이민자 중앙조직에 대한 국가보조 -스웨덴어를 교육을 위한 통합교육 실시 -통역 번역 서비스 제공 -학교에서의 모국어 강화	평등한 다문화주의 정책을 위해 시민권 취득. 동등한 권리의 향유. 체류 허가권. 인종차별금지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출처 : 장미혜 · 김혜영 · 정승화 · 김효정 · 조소영(2008), 유용식 · 손호중(2009)

서구 다문화가족정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관용을 통한 이주민의 동화정책적 사회통합을 제공하므로 자국민과 이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교육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주민의 실질적인 동화에 어려움이 확인되고 사회적 분리와 배제로 문화간 충돌과 사회적 이질감이 증대하여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독일의 경우에는 유럽연합 공동의 이민 및 난민정책과 깊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노동력부족에 대처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의 숙련된 전문인력을 유입, 단기체류와 귀환 장려가 정책의 우선순위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주민 대상으로 사회통합교육 및 의식전환을 위한 시민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독일과 유사하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매우 적은데 이는 이중국적을 허용할 뿐 아니라 국적취득이 비교적 용이하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소수집단의 언어와 문화를 적극적으로 존중하는 통합사회를 지향하고 있으며 정책 중 신규이민자언어교육, 직업훈련교육, 문화교육이 대표적인 서비스프로그램으로 각 주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표 3> 참조).

아시아 3개국(일본, 대만, 싱가포르)의 다문화정책을 비교해 보면, 지역적 공통성에 기초한 정책이기는 하나 보편적 의미의 다문화정책을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이해가 된다. 즉, 외국인의 재류자격 등에 대하여 폐쇄적인 태도가 견지되며 이주외국인이 유입된 역사적 형성과정 따라 차이 있다. 반면, 중앙(출입구 관리, 고용관리법제, 기구 통한 정책수행, 지자체 사업지원 등) 및 지방자치단체(일상생활 영위 지원, 언어, 교육, 의료등 각종 밀착형 서비스 제공)의 다문화정책 전개 역할이 세분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들어, 다문화정책 추진시 정부수준에서 차이 나타나는데 일본의 경우 지자체 중심, 대만의 경우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있다.

### 3.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현황

#### 1)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수립의 단계적 이해

##### (1)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이주자 사회통합 지원방안

2006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이주자 사회통합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공적이고 체계적인 근거가 없이 분절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국제결혼이주 중심의 다문화가족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제시된 바 있다. 이는 현재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마련의 기틀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3> 참조).

<표 3>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의 비전과 정책과제

비전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과 열린 다문화사회 실현	
기본방향	차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정책과제	탈법적인 결혼중개 방지 및 당사자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를 위한 법률제정</li> <li>○ 국제결혼에 대한 정보·교육으로 결혼당사자 보호</li> <li>○ 여성·인권담당관 배치 및 사전사증인터뷰 제도 도입</li> </ul>
	안정적인 체류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의 신원보증 해지신청 관리 강화</li> <li>○ 혼인파탄 입증책임 및 간이귀화 입증요건 완화</li> <li>○ 전용 핫라인 설치 등을 통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li> </ul>
	조기적응 및 정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및 다·문화 교육 실시</li> <li>○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및 온라인 정보 활용지원</li> </ul>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교육 추진체계 구축. 학교의 여성결혼이민자</li> <li>○ 자녀기능강화. 자년지원을 위한 교사역량 강화</li> <li>○ 집단 따돌림 예방. 복지 및 상담서비스 제공</li> </ul>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전·후 지원 등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li> <li>○ 기초생활 보장. 직업상담 및 공공서비스 부분 취업 지원</li> <li>○ 무료건강검진 실시. 방문보건서비스. 무료진료 지원</li> </ul>
	사회적 인식개선 및 업무책임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국민의 의식제고를 위한 홍보 추진</li> <li>○ 지역사회와 다문화 친화적인 체계구축 및 분위기조성</li> <li>○ 공무원 등 업무책임자 교육</li> </ul>
	추진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구 단위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li> <li>○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 상담·강사·통역 인력 양성</li> <li>○ 업무 추진체계 및 전달체계 구축. 추진기반 마련</li> </ul>

출처 : 관계부처합동(2006).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이주자 사회통합 지원방안

## (2)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 시행되면서「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이 개인을 포함한 가족단위의 통합적 지원이 되어야 하므로 가족생활주기와 가족생활의 주된 내용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가족정책의 범주를 가족생활주기 및 가족생활의 내용으로 분류(김경신외, 2007)해 보면, 생활주기 측면에서 접근하는 가족정책은 가족의 탄생부터 소멸에 이르기까지의 전생애주기를 포괄하는 정책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즉, 가족구성원 모두의 복지가 증대되어야 하고 기존의 아동 노인 청소년 여성 등으로 대상으로 선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제공되었던 정책의 비효과성을 해결하기 위해 각 생활주기에 필요한 정책들의 포괄성을 제시하기 위한 통합성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김승권외, 2009).



<표 4>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주요 내용

단계		주요 내용
1단계	입국 전 결혼준비기	국제결혼 과정의 인권보호와 교육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제, 결혼중개업자 전문지식 및 윤리의식 향상교육 실시</li> <li>○ 입국 전 현지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실시</li> <li>○ 한국인 예비배우자 결혼준비교육 실시</li> </ul>
2단계	입국 초 가족관계형성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결혼이민자의 조기적응 및 안정적 생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어교육, 문화이해교육, 가족통합교육, 상담 등 종합 서비스 제공</li> <li>○ 다국어판 생활·정책정보 매거진(Rainbow+, 연4회, 8개언어, 회당 7만부), 한국생활 가이드북, 소비자 정보안내 책자 발간·배포, 다문화가족포털 다누리 운영 등 한국생활정보제공</li> <li>○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li> </ul> </li> <li>② 다양한 매체를 통한 한국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합교육 : 언어별·수준별로 세분화된 교육프로그램 실시 중</li> <li>○ 방문교육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서비스” 실시</li> <li>○ 온라인교육(한국디지털대학교)</li> <li>○ 방송교육(방송매체 활용 한국어교육)</li> </ul> </li> <li>③ 위기개입 및 가족통합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폭력 피해 상담·보호를 위해 이주여성 긴급전화 및 전용웹터, 법률구조기관 등 관련기관간 연계 강화</li> <li>○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방문교육지도사의 남편교육·상담기능 강화</li> <li>○ 결혼이민자·배우자·시부모·부부관계·부모자녀 등 가족관계증진 위한 가족통합교육 추진</li> </ul> </li> </ul>
3단계	자녀양육 및 정착기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의 자녀 양육 능력 향상을 위해 아동양육 가정방문지도 실시</li> <li>○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li> <li>○ 보육시설에서 사회정서증진 프로그램 등 다문화 프로그램 실시</li> <li>○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역량 개발</li> <li>○ 어릴 때부터 이중언어 사용을 통해 글로벌 인재 육성</li> </ul>
4단계	역량강화기	결혼이민자의 경제·사회적 자립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이민자의 직업교육·훈련 실시 (정보화교육 등)</li> <li>○ 통번역 요원 및 다문화강사 등 결혼이민자 적합 직종 개발</li> <li>○ 국가별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지원</li> </ul>
전단계	다문화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대국민 인식개선 및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족 모니터링단 운영</li> <li>○ 다문화가족 포털사이트 '다누리' 운영</li> <li>○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li> </ul> </li> <li>②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규모의 다문화가족 실태를 조사·분석해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통계자료 확보 및 맞춤형 서비스 개발</li> </ul> </li> </ul>
		가족해체시 해체 다문화가족 자녀 및 한부모가족 보호 지원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참고 제작성(2009)

또한 가족생활의 내용 측면에서 접근하는 가족정책은 의식주, 가족관계, 가계경제, 소비생활, 양육과 부모역할, 자원관리 등 가족생활의 전반적인 영역을 기준으로 가족정책의 범주를 제시하는 것이 된다. 이에 기초하여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초기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

내용(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2009)은 <표 4>와 같다. 입국전을 포함한 결혼준비기부터 가족역량강화기까지를 다루고 있으며 전(全)단계 및 가족해체시에 포함되어야 할 가족생활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간의 주요성과를 요약하면, 단기간에 다문화가족지원정책 토대를 구축하고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안정적 수행 위한 추진체계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반면, 문제점 및 한계로는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수행 주요 기관간 역할분담을 통한 체계적인 접근이 미흡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중장기적 지원을 위한 대책이 부족하고 일반국민 대상의 다문화이해 제고와 인식개선이 많이 열악했던 것을 알 수 있다.

### 3)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수립(2010-2012)

2010년-2012년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은 국격제고 및 안정적인 사회통합 차원에서, 기존의 양적 지원에서 벗어나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다문화가족정책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였다. 즉, ①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체계정비, ②국제결혼중개관리 및 입국전 검증시스템 강화, ③결혼이민자 정착지원 및 자립지원강화, ④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⑤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등을 중심으로 5대 영역, 20개 중점과제, 61개 세부과제로 전개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표 5>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비전 및 목표

비전	열린 다문화사회로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
<b>목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li> <li>▪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글로벌인재 육성</li> </ul>	
<b>추진과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체계 정비</li> <li>국제결혼중개 관리 및 입국전 검증시스템 강화</li> <li>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li> <li>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li> <li>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총괄·조정 기능 강화</li> <li>○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li> <li>○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 기반 확충</li> <li>○ 국제결혼중개에 대한 관리 강화</li> <li>○ 결혼이민 예정자 대상 사전정보 제공 확대</li> <li>○ 자립가능한 이민자 유입을 위한 입국전 검증시스템 강화</li> <li>○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및 의사소통 지원 강화</li> <li>○ 결혼이민자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활성화</li> <li>○ 안정적 사회통합을 위한 국적취득 합리화</li> <li>○ 결혼이민자 생활적응 지원 및 사회보장 확대</li> <li>○ 이혼 및 폭력피해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증진</li> <li>○ 배우자교육 운영 및 다문화 가족간 네트워크 강화</li> <li>○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li> <li>○ 다문화가족 유아 등의 언어발달 지원사업 확대</li> <li>○ 다문화가족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li> <li>○ 학교부적응 자녀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li> <li>○ 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사회교육 활성화</li> <li>○ 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li> <li>○ 지자체 일선공무원 등 다문화 관계자에 대한 교육 확대</li> <li>○ 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li> </ul>

출처 : 국무총리실·관계부처합동(2010).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

<표 5>에서와 같이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이 전개되고 있으며 본 기본계획의 실행과 관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행 및 점검으로 과제별 소관부처 및 추진일정,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화해나가고 있다.

우리사회 최근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여성가족부는 각 부처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 보고,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주관으로 매년 부처별 집행실적 및 추진성과 등에 대한 점검·평가 실시하며 근거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규정(국무총리훈령 제552호, 2010. 7. 1)에 두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수행에 대한 2010년 주요성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 대한 체계적 접근기반을 마련하고, 국제결혼 건전화에 위한 제도개선 및 국내외 공조기반을 구축, 결혼이민자 초기적응 및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지원을 확대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시킨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제점 및 한계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서비스 질(質) 제고 등 내실화, 다문화가족 추이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책 수립 및 국민들의 다문화이해 제고를 위한 사업 등 확대를 지적하고 있다. 이에 2011년에는 국제결혼을 건전화하고,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향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국제결혼의 건전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자녀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하고자 다문화가족정책 아래 서비스 접근성 및 질(質) 제고, 다문화 이해증진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열린 다문화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정책 실천을 위하여 11개 중앙행정부서 및 기관인 여성가족부를 비롯하여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4개 사업이 완료되어 57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표 6> 2011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시행계획 추진방향

비전	열린 다문화사회로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li> <li>▪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글로벌인재 육성</li> </ul>
결혼준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중개 및 입국에 대한 검증강화 및 제도개선</li> <li>○ 국제결혼이민관 파견 등 주요 상대국과 협력 강화</li> </ul>
가족형성 및 역량강화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문교육서비스, 다국어상담 등 생활적응 지원 강화</li> <li>○ 결혼이민자 직업교육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 확대</li> </ul>
자녀양육·교육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어발달 지원 등 자녀 학습·양육 지원 확대</li> <li>○ 중도입국자녀 실태파악 및 초기적응 지원 강화</li> </ul>
전(全)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부처 총괄·조정 강화, 지역단위 계획 수립·조정</li> <li>○ 접근성 증진을 위한 센터 확대 및 내실화</li> <li>○ 다문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등 사회적 이해 제고</li> <li>○ 민·관협력 활성화 등 나눔문화 확산</li> </ul>

출처 : 여성가족부·관계부처합동(2011).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 2011년도 시행계획(안)

## IV.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위한 함의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방향과 실천내용이 주요 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 및 사회통합을 위하여 정책형성의 목적에 따라 역량과 잠재력 개발을 포함하여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지 검토됨이 필요하다. 시기적으로 그동안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돌아보며 향후의 발전방안을 고민해 보아야 할 때로서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의 기본 방향으로는 인권 및 보편적 시민권리의 확보가 기초가 되어 한국적 다문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문화적 역량개발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다문화 및 다문화가족의 개념이 더욱 정확하게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 1.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중간 점검을 통한 함의

별도의 근거법 제정 및 중앙행정부서 중심의 초기적 지원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으며 전개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정책실천을 수행하고 있는 현장사례에 기초하여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 1) 공급자 및 성과중심의 관주도형 다문화가족지원에서 대상자 중심으로 전환

이 점에 있어서는 현재 과도기적 지점에 와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이 다문화가족지원의 결정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므로 정책 실천 측면에서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전개를 위한 내용, 방법, 결과 등의 상품화·정형화 및 행정중심주의에서 탈피해야 하고 향후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수립할 때에 다문화가족 당사자의 직간접적인 참여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 2) 동일 대상에의 중복 지원으로 소규모 예산, 최소 인력, 서비스 격차, 결과 등에서의 분절적 서비스 및 비효율성 산출

현재 다각도의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중으로서 이는 중앙행정부서의 예산 확보가 부처업무수행을 위한 경쟁요인으로 전향한 점을 알 수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효과적인 전달을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본예산이 아닌 복권기금에서의 편성으로 예산지원의 불안정성이 심각할 뿐 아니라 걱정하지 못한 예산 배분이 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에 있어서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정책수혜 사각지대를 초월하여 보편적 서비스로의 전환 역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한 위기적 개입 이외에 단기간·일회성 서비스는 지양해야 한다.

#### 3) 관련 근거법의 제도적 문제해결로 실질적 법체계 수립

현재 관련법을 주관하고 있는 중앙행정부서간의 조정이 있어야 함을 인식한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근거 이외에 국적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거주외국인지원관련조례, 다문화사회의문화적지원에관한법률안,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등의 다양한 법체계와 관련되어 있다. 다문화가족 및 구성원들은 관련된 근거법에 따라 동일 상황에서의 다른 법적지위가 부여됨으로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당사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중앙행정부서간의 조정 기능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관련법에 근거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수립 및 실천적 전개를 위한 위원회 설치와 정리, 위원회 간 상호교류의 필요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4) 다문화가족지원 인프라 구축 및 적절한 예산 배정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수행의 초기시기부터 단계적인 해결을 시도할 수 있어야 했는데 여전히 너무 부진한 영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인적·물적·공간적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인데 비하여 미흡하게 마련되어 있으며 종사자 처우 및 사업비의 현실성에 기초한 적절한 예산배정 역시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자체 중심의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공무원이 배치되므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이 가능할 수 있는데 대부분 지자체의 경우 기존 업무에 다문화가족지원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일 뿐 아니라 다양한 중앙행정부처의 사업들이 지자체에서는 일부 부서 관할로 단일화(여성 및 복지 부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함께 다문화전문가 양성은 물론 담당공무원의 다문화적 전문성 결여를 극복할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 5) 다문화가족의 의존성, 비자발성, 기회적 이용 등의 만성적인 부정적 태도형성 유의

다문화가족의 급증으로 초기적인 접근에서 수혜대상자로의 다문화가족 역할을 제한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므로, 다문화가족의 교육에 의한 학습 및 정책적 지원 과정을 통한 자발적이며 독립적 측면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즉, 다문화가족구성원들이 수혜자인 동시에 도움을 주는 사회적인 기여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 6) 한국적 다문화가족지원 근거 마련

최근까지 수행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여러 면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다문화적 경험이 일천한 우리사회에서는 서구의 선경험과 학문적 이론의 인용을 산발적으로 해 왔음을 인정하되 향후에는 크게 유용치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부계부권의 가족중심 가치관, 단일민족 또는 순혈주의 신봉 특성을 고려한 한국적 다문화가족지원의 근거를 정책, 제도적으로 수립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 2. 향후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 및 전망

이를 위한 기본 방향으로는 법적 근거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한 체계의 구체화, 지역수요자 중심 서비스로의 전환 및 대상자 만족 지향, 중앙행정부서의 촉진적·지원적 역할에 기반한 거버넌스적 관리기능의 충족, 다양한 지원을 위하여 연계로서의 지역중심 자원 개발, 보편적 가족복지서비스로의 전환 및 글로벌화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기초의 내포, 당

사자의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겠다.

## 1) 정책 제도적 차원

### (1) 중장기 정책 수립

다문화가족정책지원 대상의 명시적 정의(다문화가족) 및 정책수립 위한 한국적 이론기반이 정비되어 단기·중기·장기적 목표 및 우선순위 설정을 통한 적극적인 추진을 포함하여 실천적이며 실질적이기 위하여 단계별 추진연도를 지정함(예, 단기정책: 4년)은 물론 핵심내용 실천을 중심으로 하는 선택과 집중의 시도가 있어야 한다. 또한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우선적인 정책수행에서 미흡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경제, 의료, 교육, 복지, 거주지역 분포(거주밀도 낮은 지역 지원 대안) 등을 단계별로 반영하여 세계화현상의 하나인 다문화가족일지라도 그 안정적인 형성 유지가 한국적 특성에 적합한 다문화적 기회와 규제의 적정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시기별 예측되는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발굴 및 예방전략을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로드맵 구축 및 구체적인 정책실천을 위한 매뉴얼이 구성되므로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전개시 지역이나 특성등의 균형이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

### (2)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실천 전문기관 심화

다문화가족지원의 정책전달체계인 현재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의 개인적·경제적·사회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서비스 전달체계의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다층적인 심화가 요구된다. 예를들면, 정책전달 핵심 전문기관 기능과 역할의 구조화를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의 one-stop 서비스 체계 구축, 지역적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 및 보급, 현장실천가의 급여·복지적 처우 및 사업 수행 예산의 적적성 보장이 기본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 허브기관의 선정으로 다문화가족지원의 현실적인 전달, 즉, 대도시, 수도권, 중소도시, 농어산촌형, 오지형 등으로 지원이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책전달 및 위기개입 위한 2차기관 설치 또는 기존기관 연계가 제도화되어 상담소, 쉼터, 창업센터 등이 각각의 역할로 문제해결 또는 강점강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 공동모금회 설치 및 운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통한 보조사업, 특성화 사업 등이 지원되므로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반의 지속적인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어야 한다.

## 2) 개인 가족적 차원

다문화가족정책의 지원으로 개인 및 다문화가족의 능동적·자발적 욕구해결 또는 태도 형성으로 자생능력이 강화되어야 함도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은 개인을 포함한 가족단위의 통합적 지원이 우선되므로 한국인 배우자·확대가족·지역사회의 동시 노력이 중요함을 인식하여 양방향적인 공동의 교육이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 더욱이 자녀의 학습 및 전인교육의 장으로서 기능적인 가족환경의 조성이 중요하며 이와함께 인간으로서의 인권 보장 및 내국인과 차별없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부여가 이루어져 개인의 자아존중감 및 가족건강성의 확보가 시급한 내용이 되기도 한다.

### 3) 교육환경적 차원

#### (1) 초·중등·대학 교육과정 개편 및 다문화교육 확대

현대사회의 대명제이기도 한 상생을 위한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의 다차원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기존의 각급학교 교과서 내용의 검토 및 수정, 공교육기관에서의 지속적인 다문화 현상 이해 교육 실시, 다언어경시대회, 다언어서적 출판, 다언어 중 능력시험교과목 채택 등으로 이중언어 육성교육의 적극적인 기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다문화리더를 배출하고 다문화특성에 기반한 인재양육을 위하여 다문화민감성에 기초한 교육과정 중심의 교사교육이 필요하다.

#### (2) 학교교육 지원

공교육을 통한 다문화사회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과 바른 이해를 위하여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학습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중언어, 어머니나라 탐구, 학교임원활동 등 다양한 보완프로그램 역시 실시되어야 한다. 어머니회, 자녀양육·교육 정보공유, 공동육아방 등 학교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 지원되어 부모역량이 강화될 뿐 아니라 다문화강사, 통번역사, 다문화전담교사 등 결혼이민자의 잠재보유능력 활용 기회가 유연하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밖의 내용으로는 다양한 문화컨텐츠 개발 및 활용으로 실용적·교육적·다문화적 내용의 표준화된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이 마련되고 이용방법의 수월성 및 다양화가 제고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적 다문화의 가치와 방향성 연구 및 적용을 위하여 관련 연구의 중장기 계획 및 부처간·학제간 공동연구로 최적의 다문화가족지원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 4) 사회 문화적 차원

#### (1) 범국민적 다문화인식 수용·전환 캠페인

다문화사회에는 다문화가족만이 구성원이 아니라 비다문화가족 역시 중요한 구성원이 되므로 사회 전반에 있어서 다문화의 긍정성에 대한 지속적이며 다양한 홍보가 양방향적인 접근으로 다문화사회 인식전환 교육이 정례화되어야 하고 영어권 출신, 고급인력 선호 등의 선택적 차별화가 타개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체계로서 대중적 전달매체(신문, TV 등)의 다문화 접근 관점과 역할에 수정이 있어야 하며 건강한 다문화가족의 발굴 및 수범사례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 (2) 인구구성 비율의 98%는 비다문화가족임에 유의

다문화가족은 우리사회에서 단기간에 급증한 가족형태로서 이들을 위한 지원이 중요한 반면 기존 우리사회 구성원의 다문화민감성 교육 및 적응교육 역시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비다문화가족 vs. 다문화가족 지원의 불균형 인식에 대한 해소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구구성의 변화에 기인하는 다문화가족의 증가로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이 요구되는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은 개인·가족적, 사회·문화·경제적, 제도적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되며 특히 사회통합의 정책적 의제를 부상시키고 있다. 한편으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가족을 단위로 하며 독립적인 고유성을 가지는 정책영역이면서 가족정책, 사회정책, 여성정책 등과 밀접한 관계를 통하여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이라는 궁극의 목적을 공유하게 된다. 2006년 6대 영역 14대 추진과제로 시작하여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수립된 바 있다. 저출산, 고령화, 1인가족 증가, 결혼지연, 이혼과 재혼의 증가 등 인구여건에 따른 가족정책이 중요해지고 있으며가족복지에 대한 낮은 공적 책임성 수준의 현실(초의수, 2009) 등을 감안해 볼 때,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본 가족정책과의 연계로 거버넌스적 정책으로의 운영을 통하여 유연하고 충실한 서비스전달로 접근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최근의 사회현상에 대한 해결과 예방을 목적으로 수립되었으므로 Kamerman과 Kahn(1976)의 언급대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한 분야로서의 가족정책, 다른 정책의 수단으로서 가족정책, 사회정책의 선택을 위한 관점 및 기준으로서 가족정책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참고문헌]

- 관계부처합동(2011).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2011-2015) 2015 가족행복 더하기.
- 국무총리실 · 관계부처합동(2010).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안)(2010~2010).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 김승권 · 송혜림 · 신은주 · 김유경 · 박지윤(2009). 가족정책서비스 효율화를 위한 발전방안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유경(2009).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정책방안. 보건복지포럼(2009.5), 29-52.
- 김이선 · 황정미 · 이진영(2007). 다민족 ·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 (I): 한국사회의 수용 현실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이선 · 민무숙 · 홍기원 · 주유선(2011). 다민족 ·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V): 다문화사회 정책의 성과와 미래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설동훈 · 서문희 · 이삼식 · 김명아(2009). 다문화가족의 중장기 전망 및 대책연구: 다문화가족의 장래인구추계 및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보건복지가족부.
- 성미애(2011).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통합정책에 관한 한 · 미 비교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3), 63-81.
- 여성가족부(2011).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 (2011-2015) 2011년도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 여성가족부(2011).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 (2011-2015) 2011년도 시행계획-지방자치단체-
- 여성가족부 · 관계부처 합동(2011). 다문화가족지원법령 개정 후속조치 및 2011년 시행계획 보완과제 추진현황.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안건(서면).
- 여성가족부 · 관계부처 합동(2011). 국제결혼 건전화 ·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종합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안건(서면).
- 오경석(2007). 어떤 다문화주의인가? 다문화사회 논의에 관한 비판적 조망.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 현실과 쟁점. 서울:한울. 21-56.
- 오윤자(2009a). 다문화역량강화를 위한 다문화가족지원 추진기반 구축 방안 고찰-네트워크 및 활동가 중심으로. 2009 한국가정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구두발표.
- 오윤자(2009b). 다문화사회에 대비한 다문화가족정책의 추진과제.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발제원고.
- 오윤자(2009c). 부모역량강화 부문에서의 다문화가족지원-다문화가족지원정책 및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2009 한국열린부모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9-29.
- 오윤자 · 정민자 · 박정윤 · 라휘문 · 김상만(200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모델 및 발전방안. 보건복지가족부.
- 유용식 · 손호중(2009). 다문화사회 대응정책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6(2), 447-470.
- 임형백(2009). 한국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다문화사회의 차이와 정책 차별화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1(1), 51-74.
- 장미혜 · 김혜영 · 정승화 · 김효정 · 조소영(2008). 다민족 ·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II). 다문화 역량증진을 위한 정책 · 사회적 실천 현황과 발전 방향-(총괄 보고서).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8-17-01. 2008 연구보고서-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장혜경 · 김은지 · 김영란 · 김혜영 · 정재훈(2011). 가족의 미래와 여성 · 가족정책전망(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초의수(2008). 한국 가족정책의 재평가-최근 한국가족 변화 경향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여성연구논집 제19집**, 163-210.
- 한건수(2009). 한국사회의 다민족화와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이주민 한국인과 선주민 한국인의 적응을 중심으로. 한국이민정책의 동향과 미래의 대응방향. 제2회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포럼. 법무부 · 매일경제. 87-100.
- 한승준(2009). 지자체 다문화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2), 269-291.
- 황정미 · 문경희 · 양혜우 · 정승희 · 박민정(2009).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참여현황과 정책 과제 - 심층면접 사례를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과 협력체계.
- Doman Lum(2008). The Case for Culturally Competent Practice in Korea. International Networking for Professionals in Multicultural Society. 평택대학교다문화가족지원센터. 13-74.
- Michael Reisch(2007). Construction a Socially Just System of Social Welfare in a Multicultural Society:The U.S. Experience. 한국사회복지학회 2007년도 국제학술대회자료집, 147-191.

##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현황과 전망

이 선 형(호서대학교 교수)

본 논문은 본문에서 제시하였듯이 가족정책대상을 보는 관점이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변화하고 있고, 특정한 이념성을 지향하는 가족에서 탈피하여 존재하는 모든 가족들이 정책적 개입의 단위로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가족정책의 변화의 중심에 서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현황을 고찰하고 전망하고 있다는 데에 있어 시의적절한 논문이라고 여겨집니다. 다만 좋은 문제제기를 통해 읽으면서 느꼈던 몇 가지 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그동안 이루어져왔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 관한 많은 논의와 어떠한 점에서 차별점을 갖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발표본문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정부의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이 수립되어 시행된 것이 비록 초기단계인 것은 사실입니다. 즉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 계획인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이 2010년 5월에야 비로소 이루어진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현황과 이를 바라보는 많은 연구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점에서 이 연구가 갖는 의미와 차별점이 있는지에 대해 서두에 밝힌다면 더 좋은 논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의 정책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표 1>의 보건복지가족부나 여성부, 노동부의 정책의 부서 변경으로 인한 정책 변경, <표 4>의 경우도 위의 기본계획 수립 이후의 내용 변경 등(예 : 3단계의 자녀정서, 생활지원 서비스 시범 제공), 시의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들이 몇 군데 눈에 띕니다. 이러한 내용이 보완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수립의 단계적 이해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2005년 건강가정기본법이 만들어진 이후의 수립 단계를 살펴봄으로써 최근의 경향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더 도울 수 있도록 그 시기를 1단계, 2단계와 같이 구분하거나 형성기, 확대기, 안정기 등의 정책 형성에 대한 단계를 구분하여 나누어서 설명하였다면 훨씬 설득력이 있는 발표논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본 논문은 정책에 대한 분석으로 정책자료를 주로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자문회의 및 현장실무진 중심의 정례회의 자료에 기초한 내용분석이라 밝히고 있으나 이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었다면 어떠한

자료에서 어떻게 인용되었는지에 대해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에는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 대한 훌륭한 합의를 해주셨습니다. 공급자 중심에서 대상자 중심으로의 지원 변화, 서비스 중복지원의 문제, 한국적 다문화가족지원 근거 마련 등을 제안해주셨으며 앞으로의 중장기적 정책 수립, 실천 전문기관의 심화, 대다수의 가족이 비다문화가족이라는 것에 대한 상기 등에 대한 제안은 생각해볼 여지를 갖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안이 더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면 다문화가족지원에 대한 정책이 더욱 구체화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